

발의안 7

**CALIFORNIA 서머타임제를 연방법에 맞춤.
입법부가 서머타임 기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함.
입법부 발의 법안.**

공식 제목 및 요약

법무장관 작성

이 법안의 내용은 주 국무장관의 웹사이트 <http://voterguide.sos.ca.gov>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- 연방법이 지정하고 있는 시간대를 California 내에서의 표준 시간으로서 "태평양 표준시"로 정함. 적용이 포함됨, 단 그러한 변경은 연방법에 부합해야 함.
- California 서머타임이 3월 둘째 일요일 오전 2시에 시작하여 11월 첫째 일요일 오전 2시에 끝나는 것으로 규정하며, 이는 연방법과 일치함.
- 입법부가 향후 3분의 2 찬성으로 California의 서머타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함. 이에는 연중 지속적인

주 정부와 지방정부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추정 요약:

- 서머타임제에 대한 변경은 입법부의 미래의 조치와 잠정적으로는 연방정부에 달려 있으므로, 이 법안은 직접적 재정적 영향이 없음.

AB 807(발의안 7)에 대해서 입법부가 행사한 최종 투표
(2018년 법령, 제60장)

상원:	찬성 26	반대 9
하원:	찬성 68	반대 6

입법 분석관의 분석

배경

연방법에 따라 연중 일부 기간에 서머타임제를 적용합니다. 연방법은 각 미국 지역에 맞는 표준 시간대를 지정했습니다. 예를 들어 California 및 기타 서부 주에는 태평양 표준시가 적용됩니다. 연방법은 각 지역의 표준시를 서머타임제(DST)로 알려진 기간인 3월 초반부터 11월 초반까지 한 시간씩 앞당길 도록 지정합니다. 이에 따라 서머타임제 기간에는 일출 및 일몰 시간이 한 시간씩 느려집니다. 현재 연방법은 주들의 연중 서머타임제 적용을 허용하지

않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연방법은 주들이 서머타임제가 아닌 표준시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, 현재 Arizona와 Hawaii가 이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.

약 70년 전, California는 DST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.

1949년 California 유권자들은 California에 서머타임제를 확립한 주민 발의안을 승인했습니다. 입법부는 승인을 위해 변경사항을 유권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 발의안에 대한 변경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.

제안

발의안 7은 연방 의회법에 따라 변경이 허용되는 한, 3분의 2 표결로 입법부가 DST(연중 계속하여 DST를 적용)를 변경하도록 허용합니다. 해당 변경사항의 적용 전까지 California는 현 서머타임제 기간을 유지하게 됩니다.

재정적 영향

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적 영향이 없습니다. 해당 변경사항은 주 및 지방 정부의 비용 또는 수익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. 이는 서머타임제 변경을 위한 입법부 및 잠재적으로 연방 정부의 향후 결정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서머타임제 DST변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.

입법부에서 DST를 변경할 경우,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입법부가 연중 서머타임제를 승인할 경우, 11월부터 3월까지 일출 및 일몰시간이

1시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해당 기간 동안의 조명, 난방, 냉각에 사용되는 순 에너지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또한 연중 일부 기간 동안 서머타임제를 적용하는 현 시스템은 1년에 두 번 표준시와 서머타임제를 변경할 때 일부 시민들의 수면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는 잠재적으로 작업생산성과 사고 발생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연중 DST는 위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주 및 지방 정부 재정에 대한 순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경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주로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목록은 <http://www.sos.ca.gov/campaign-lobbying/cal-access-resources/measure-contributions/2018-ballot-measure-contribution-totals/>를 참조하십시오. 위원회의 상위 10명의 기부자를 확인하려면 <http://www.fppc.ca.gov/transparency/top-contributors/nov-18-gen.html>를 참조하십시오.

주 법안의 전문을 구하시려면 주 국무장관에게 (866) 575-1558 로 문의하시거나 vigfeedback@sos.ca.gov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, 사본을 우편으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.